

2026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도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 3. 10.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본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해외 의존도 탈피 및 기업 자체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
- 사업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해외 의존도 해소,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 모집개요

구 분	모집규모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자유과제	6개사	2026. 5. ~ 2027. 6. (14개월 이내)	최대 159,000천원	추후 협약체결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변동가능
지정과제	2개사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사업공고일 기준 충북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종(붙임, 9p 참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충북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가능
-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대상 자격요건	과제주제
자유과제 (컨소시엄 가능)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충청도에 소재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업의 해당 소부장 산업 분야 관련 자율 주제로 선정하여 신청
지정과제 (컨소시엄 필수)	(지정과제) 소부장+AI R&D과제 ▶ 소부장 + AI 융합을 위한 기술개발로 TRL 5단계 ~ 8단계에 해당 하는 과제 지원	

○ 지정과제 신청자격 및 요건

- 산·학·연 컨소시엄 필수 구성으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소부장+AI 융합을 위한 기술개발로 TRL 5단계 ~ 8단계에 해당하는 과제로 지원

단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구분	기초연구		실험		시제품		실용화		양산
	기초실험	개념정립	기본 성능검증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장치·시스템 시제품제작	시제품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시제품 인증	사업화

- 기술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하여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성능 고도화
- 최종결과물: 지정과제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는 단순 AI 솔루션·플랫폼 구축(도입)이 아닌, AI 기술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품 또는 핵심기술 개발

※ AI 기술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제품 및 핵심기술 개발을 최종 정량정성 목표로 설정

○ 신청기업은 자유과제 또는 지정과제 중 1개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기업 자부담 비율

구분	민간부담금	비고
중소기업	지원금 기준 10%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이 50% 이상 계상 - 현물(인건비 등) 계상의 경우 자부담 비율 초과하여 계상 가능
중견기업	지원금 기준 15% 이상	

○ 사업비 부담(예시)

과제별	기업유형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자유과제/ 지정과제	중소기업	159,000천원	7,950천원	25,000천원	191,950천원
	중견기업	159,000천원	11,925천원	30,000천원	200,925천원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최소 매칭 금액이며 초과하여 부담 가능

○ R&D교육 필수 참여: 향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추진하는 R&D교육 의무 이수 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3. 10.(화) ~ 2026. 4. 10.(금) 17:00까지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 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등록 후 사업담당자 메일 송부 必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이 메 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 담당자 메일 제출(lkj247@cbist.or.kr)
- 제출서류

No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주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자유과제)	1부	첨부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지정과제)	1부	첨부1-1
2	주관	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첨부2
3	주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1부	첨부3
4	주관/참여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첨부4
5	주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첨부5
6	주관	중복지원(신청) 제한 약약서	1부	첨부6
7	주관/참여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약약서	1부	첨부7
8	주관/참여	서약서	각 1부	첨부8
9	주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10	주관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년간)	1부	-
11	주관/참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12	주관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조회 가능)	1부	첨부9
13	주관/참여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필요시 공장등록증)	각 1부	-
14	주관/참여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
15	주관	구매의향서	1부	첨부10

- 제출요령: 제출서류 1~15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후 메일 송부

4 사업비 및 성과관리

- 사업비 지급: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50%, 2차 50%)
 - 1차 지급: 과기원⇔선정기업 협약체결 직후
 - 2차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후 관리
- 기업명의 통장 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입금 필수(선정완료 후)
-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협약체결일 ~ 과제종료 후 2개월)
- 부가가치세 사업비 편성 불가
- 협약 후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 집행한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중간점검(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 후 사업비 환수 예정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 하거나 타 통장으로 무단 인출 시 사업비 환수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 협약종료 이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 충북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주관기관) 지정된 기한 내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이자(해지이자 포함) 반납
- 성과관리: 1건 이상
 - 지식재산권: 특허출원(등록), 실용신안 ※ 상표 제외
 - 기 타: 신기술인증(NEP, NET)
- ※ 특허, 인증, 시험평가, 논문 등 성과는 본 과제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진행시 사사표기 필수
- 기술료 징수: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 시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율	내 용
지원금의 10%	- (성공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실패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 시 제재 환수심의 * '실패' 판정된 과제라 하더라도, 과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면제 및 기술료 징수 - (징수기간)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한 계좌에 납부 * 주관기간은 기술개발이 완료 후 지원금의 10% 정액기술료 징수(회계정산 후 인정금액에 한함)

- 성과활용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과제종료 후 3년간 충북과학기술 혁신원으로 제출
 - 제출서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5 평가기준 및 성과관리

○ 선정방법: 서류평가,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등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기업의 지원사업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선정
- 선정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
기술성 (30)	기술개발 추진전략 (30)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 기술개발 내용의 혁신성 및 독창성 ○ 기술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연구역량 (30)	기술개발 연구능력 (30)	○ 연구자의 전문성 및 연구 수행 능력 ○ 보유 기술의 수준 및 경쟁력,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 사업비 구성 적정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효과성 (40)	기술개발 기대효과 (40)	○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및 사업화 가능성 ○ 기술개발 결과의 수입대체 및 국산화 효과성 ○ 기술개발 결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 현장실태조사 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
경영 및 개발 능력	사업추진체계	○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및 능력 보유여부 ○ 기술개발 사전준비 과정 우수성 ○ 최근 기술개발 실적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여부
	연구자원	○ 사업신청서 내 인력 확인 ○ 주관기관 보유시설 및 기자재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확인

○ 발표평가 기준(자유과제)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사업목표 명확성 (30)	목표의 명확성과 추진전략 (3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기술성 (30)	개발 개요 (10)	○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기술 내용 (20)	○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사업성 (20)	사업화 계획 (10)	○ 사업화 가능성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매출 및 고용효과 (10)	○ 매출(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 성공시 고용 목표의 실현 가능성
수입대체효과 (20)	국산화 효과 (20)	○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와 수출규제 품목과의 적합도 ○ 동 사업지원을 통해 국산화 개발 가능성 ○ 동 사업지원을 통한 국산화 대체 효과

○ 발표평가 기준(지정과제)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사업목표 명확성 (20)	목표의 명확성과 추진전략 (2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기술성 (40)	개발 개요 (10)	○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기술 내용 (10)	○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AI 융합 적정성 (20)	○ AI 기술 적용의 적정성, 기술 수준 및 구현 가능성 ○ 소부장 기술과 AI 융합 정도 및 고도화 수준
사업성 (20)	사업화 계획 (10)	○ 사업화 가능성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매출 및 고용효과 (10)	○ 매출(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 성공시 고용 목표의 실현 가능성
수입대체효과 (20)	국산화 효과 (20)	○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와 수출규제 품목과의 적합도 ○ 동 사업지원을 통해 국산화 개발 가능성 ○ 동 사업지원을 통한 국산화 대체 효과

○ 가점은 발표평가 시 적용

- 구매의향서(3점), 소부장 전문기업확인서(2점), 기업부설연구소(2점)
- 동점 시 가족친화인증, 일하기좋은기업인증 취득기업 우선 선정

6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사업비 계상기준(규정 2) 준수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既 지급 인건비 불인정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
-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채용에 한하여 현금계상 가능하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까지 계상 가능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시 불인정[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에 해당하더라도, 간접비는 배정된 현금의 최대 10%까지 계상 가능

○ 평가결과는 ‘선정’, ‘미선정’으로 통보, 평가관련 의견 및 점수는 비공개

○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충청북도 지원사업에서 수행 결과가 실패로 판정되었거나 부정 사례가 발생한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과제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과제중복)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7

향후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 공고 및 접수	· 과제사업 공고 및 접수	3월 ~ 4월	과기원
↓			
자격 및 서류평가	· 신청기업의 참여 자격기준 확인 · 지원기업 신청서를 통한 서류 평가	4월	과기원, 평가위원회
↓			
현장실태조사	· 지원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	4월	과기원, 평가위원회
↓			
선정평가	· 지원기업 PPT 발표 선정 평가	5월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 주관기관 협약 체결 · 1차 지원금(50%) 지급	5월	과기원, 주관기관
↓			
R&D과제 수행	· 기술개발 과제 진행	5월 ~ '27년 6월	주관기관
↓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	· 과제 추진 상황 중간 현장 점검 · 2차 지원금(50%) 지급	'26년 11월~12월	과기원, 평가위원회
↓			
결과평가	· 과제 최종결과 평가	'27년 7월	평가위원회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세부문의

담당자 소속	전화	이메일
AI융합혁신본부 디지털산업부 산업육성팀	043-210-0844	lkj247@cbist.or.kr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0. 18.>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1. 소재·부품의 범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면 방적사	13101
	모 방적사	13102
	화학섬유 방적사	13103
	연사 및 가공사	13104
	기타 방적사	13109
	면직물	13211
	모직물	13212
	화학섬유직물	13213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13219
	편조 원단	13300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13401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13402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13403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13409
	부직포 및 펠트	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	13993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1399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17103
	위생용 원지	17106
	기타 종이 및 판지	1710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20111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20119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수소	20121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20122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20129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20131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0132
	합성고무	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2020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20203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20321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20322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20411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20413
	계면활성제	20421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20491
	접착제 및 젤라틴	2049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20499
	합성섬유	20501
	재생섬유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 물질	21100
	체외 진단 시약	213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고무 타이어 및 튜브	22110
	고무 패킹류	22191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22192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22199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2211
	플라스틱 필름	22212
	플라스틱 시트 및 판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은 제 외한다)	22214 22241 22249 22292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틱(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211 23212 23222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24133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24191
	그 외 기타 1차 철강	24199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3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9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2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9
	기타 1차 비철금속	24290
	선철 주물 구조제품	24311
	강 주물 구조제품	24312
	알루미늄 주물 구조제품	24321
	기타 비철금속 구조제품	243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25121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25122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2512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25130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25200
	분말 야금제품	25911
	금속 단조제품	25912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25913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25914
	금속 열처리제품	25921
	도금제품	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25923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25924
	그 외 기타 금속가공품	25929
	톱 및 호환성 공구	25934
	볼트 및 너트류	25941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25942

	금속 스프링	25943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25944
	피복 및 충전 용접봉	25995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26112
	발광 다이오드	26121
	기타 반도체소자	26129
	액정 표시장치	26211
	유기발광 표시장치	26212
	기타 표시장치	2621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26223
	전자부품 실장기판	26224
	전자축전기	26291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26292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26293
	전자감지장치	26294
	그 외 기타 전자부품	26299
	기억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26321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26322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26323
	기타 주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329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10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1
	이동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9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1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266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12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1
	치과기공물(부품에 한정한다)	27192
	치과용 임플란트(부품에 한정한다)	27193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4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2719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9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3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4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215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9
	시계 및 시계부품(시계부품에 한정한다)	27220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27301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에 한정한다)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및 발전기	28111
	변압기	28112
	에너지 저장장치	28113
	기타 전기 변환장치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28121
	전기회로 접속장치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28123
	일차전지	28201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28202

	기타 이차전지	28209
	광섬유 케이블	283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28303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28410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3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9
	주방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1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8520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28902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29111
	기타 기관 및 터빈	29119
	유압기기	29120
	액체 펌프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2913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29133
	구름베어링	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29150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1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2
	컨베이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71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2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4
기체 여과기	29175
액체 여과기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29177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80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1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2
동력식 수지공구(부품에 한정한다)	29193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99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10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30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1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29280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29291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2
주형 및 금형	29293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301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3039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31114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3120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31312
	항공기용 엔진	31321
	항공기용 부품	31322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10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31921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31922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2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장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6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71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3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21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은 제외한다)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29150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29162
	컨베이어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71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72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73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29191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99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30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29280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29291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2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9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 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 웨어에 한정한다)	58222

비고

1.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